

평창군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03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호밀은 수입 종자로, NH무역을 통해서만 국내유통이 가능하고 조합 창고는 종자 보관 장소로 사용함은 물론, 배부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이 확보되어있는 대관령농협에 민간위탁하여 위탁 수수료 이상의 업무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제안함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, 지방자치법 제104조,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,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사업명 :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호밀 종자를 NH무역을 통해서만 국내 유통이 가능하고 조합 창고는 종자 보관 장소로 사용함은 물론, 종자를 배부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어있는 대관령농협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위탁수수료 이상의 업무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추진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사업량 : 호밀 1,100포(1포/20kg), 166.4ha 식재 [23년도 계획]
 - ※ 매년 호밀 수요량과 종자 단가에 따라 사업량 변동
- 위탁비용 : 실제 지출한 사업비(자부담 포함)의 3%
- 위탁사무 : 자부담 납부확인, 호밀 확보, 보관 및 배부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80
대관령농협(대관령농협자재 판매점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 : 위·수탁협약일 ~ 2025. 12. 3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수의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0,391천원(도비30%, 군비50%, 자부담20%)
- 산출근거 : 매년 호밀 수요량 조사 결과와 종자 단가에 따른 예산 산출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2020년 위·수탁협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, NH무역을 통해 호밀 종자를 확보하여 종자를 대량 보관할 수 있으며 원활하게 종자를 배부할 수 있는 법인 단체로 민간위탁에 적절하다고 판단함

자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운영현황

구 분	2020년	2021년	2022년	비고
지역	대관령면			
품목	호밀			
신청수	68호	67호	47호	
식재량	1,681포	1,291포	1,125포	
예산액 (위탁수수료)	80,605천원 (2,072천원)	48,348천원 (1,663천원)	50,357천원 (1,831천원)	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제7조(계약사무의 위임·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지방회계법」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, 중앙행정기관의 장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·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